

# [검토보고서]

2017. 7. 12(금) 제 3 0 7 회 임 시 회

#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





#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 검 토 보 고

# 1. 제안경과

○ 제안자 : 양주시장(자치행정과)

O 제출일: 2017년 5월 2일

# 2. 제안이유

○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'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' (지방자치법 상 행정협의회)를 구성하여 상호 문화·예술·관광·경제 분야 등 교류 증진을 통해 지방자치 건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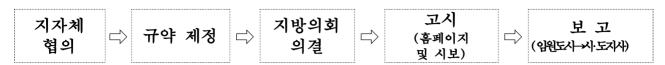
※ 참가도시 : 구리시, 남양주시, 도봉구, 동두천시, 양주시, 의정부시, 중랑구

O 이에,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# 3. 제안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의 명칭(안 제2조)
- 나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(안 제3조)
- 다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(안 제4조)
- 라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방법(안 제6조~제8조)
- 마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 필요한 경비 및 부담 지출방법 (안 제9조~제16조)

### 4. 행정협의회 설립절차(지방자치법 제152조)



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제정 개요

-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 문화·예술·관광·경제 분야 등 교류 증진을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
- O 협의회 규약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#### 관련법령

#### [지방자치법시행령]

####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

-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

#### 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

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협의회의 명칭
- 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- 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- 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
#### [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]

#### 제2조(구성)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구성은 수도권협 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·인천광역시장·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,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,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장으로 한다.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협의회 규약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는 협의회 명칭, 사무, 구성 지자체 등을 포함한 18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음.

# [규약의 구성]

구분	조례안	주요내용		
제1장 총 칙				
제1조	목적	협의회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 공헌		
제2조	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로 함			
제3조	구성 및 자격	구리시, 남양주시, 도봉구, 동두천시, 양주시, 의정부시, 중랑구		
제4조	사업	우호증진, 문화유적지 공동할인, 향토자료 의견교류, 지역축제 협력 등		
제5조	사무소의 소재지 등	회장이 속한 시・구에 둠		
제2장 조 직				
제6조	임원의 구성 등	회장은 가나다 순번제로 함. 임기 1년		
제7조	임원의 임무	회장의 임무		
제8조	위원의 책무	신뢰증진에 힘쓰고 협의회 결정시항을 이행토록 노력해야함		
제3장 회 의				
제9조	회의 정례회(연2회), 임시회(회장소집 및 위원 1/3요구), 실무협의회 등			
제10조	실무협의회	협의회업무담당(6급상담) 및 담당자로 구성		
제11조	소집	20일 전까지 문서(원칙), 전화, 팩스, 등으로 통지		
제12조	의결	과반수 출석, 과반수찬성으로 의결(서면기능)		
제13조	협의·결정 사항의 효력	결정된 시항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		
제4장 재 정				
제14조	경비부담	시업경비는 각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하여 회장도시 예산에 편입		
제15조	회계	예산집행 및 결산보고는 회장이 정례회에서 보고		
제16조	사무 인수인계	임기만료시 인수인계시항		
제5장 보 칙				
제17조	규약의 개정・폐지	규약 개정 및 폐지는 만장일치 합의,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		
제18조	기타	규약이 정하지 않은 시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		
부칙	제1조(시행일) 고시한 날부터 시행			
TH	제2조(특례) 최초 회장은 양주시장으로 한다.			

#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협의회의 명칭(안 제2조)

제2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'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' (이하 "협의회" 라 한다)라 한다.

○ 1395년 태조4년 '양주군'으로 시작되었던 양주의 역사에 기인한 '624년'과 그 구성도시였던 11개의 행정구역의 화합과 부흥을 위한 '르네상스'를 조합한 명칭임

양주시 행정구역 변천사						
양주부 (楊州府, 1397)	<b>→</b>	양주목 (楊州牧, 1466)	<b>→</b>	양주군 (楊州郡, 1895)	-	양주시 (楊州市, 2003)

- ※ 2019-1395 = 624년, 르네상스= 부흥, 부활
- ※ 양주목: 1466년부터 1895년까지의 설치되었던 행정구역임.

# 2)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(안 제3조)

- 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협의회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기초자치단체인 구리시·남양주시·도봉구·동두천시·양주시·의정부시·중랑구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은 구리시장, 남양주시장, 도봉구청장, 동두천시장, 양주시장, 의정부시장, 중랑구청 장으로 구성한다.
  - ③ 구성도시의 추가는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결정한다.
  - ④ 협의회의 표기 순서는 "가나다 순"으로 한다.
  -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에 편성 되었던 11개 도시(양주, 구리, 남양주, 도봉구, 동두천, 의정부, 중랑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노원구, 강북구) 중 상생우호협약을 체결한 7개시(양주시, 도봉구, 동두천시, 의정부시, 중 랑구, 구리시, 남양주시)로 구성.
    - 참가도시(7): 양주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도봉구, 동두천시, 의정부시, 중랑구
    - 불참도시(4): 성북구, 동대문구, 노원구, 강북구

#### [관할구역 변천사]

연번	도시명	옛 관할구역 변천
1	노원구	성북구 <b>(노해면)</b> → 도봉구(일부) → 노원구 신설
2	도봉구	성북구 <b>(노해면)</b> → 도봉구 신설
3	강북구	성북구 <b>(노해면)</b> → 도봉구(일부) → 강북구 신설
4	동두천시	이담면
5	의정부시	시둔면
6	중랑구	<b>구리면 일부</b> → 동대문구 일부 → 중랑구 신설
7	구리시	구리면 일부
8	남양주시	별내면, 진건면, 진접면, 화도면, 와부면, 미금면
9	동대문구	<b>구리면 일부</b> → 동대문구 → 중랑구 분할
10	성북구	<b>노해면</b> → 성북구 → 도봉구/노원구/강북구 분할

# 3)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업 및 사무소 소재지 (안 제4조 ~ 제5조)

제4조(사업)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 · 예술 · 체육 · 경제 등 교류 협력 사업
- 2. 각종 단체·지역축제 주민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사업
- 3. 향토 문화 자료를 포함한 유·무형 문화재의 상호 방문 및 의견교류
- 4.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입장료 공동할인 사업
- 5.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5조(사무소의 소재지 등)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시·구에 둔다.

- ②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 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는 협의회 사무소에서 관리한다.
-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교류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음. 15개 시로 구성되어있는 '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'의 경우 문화유 적지 및 관광지 입장료 공동할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회장이 속한 시·구는 사무실을 두며, 각종자료를 관리함.

#### 4) 혐의회 조직 (안 제6조~제8조)

제6조(임원의 구성 등)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인으로 구성 한다.

- ② 회장은 도시명의 "가·나·다 순"에 따른 순번제로 한다. 다만, 회장이 되길 희망하는 도시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임기의 시작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임무)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각종 사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위원의 책무) 위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,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임원 : 회장 1명 (임기 : 1년)

○ 순번 : 가·나·다 순

- 구리시 → 남양주시 → 도봉구 → 동두천시 → 양주시 →의정부시 →중랑구

#### 5) 회의 (안 제9조~제13조)

제9조(회의) ① 협의회는 정례회, 임시회, 실무협의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상반기 · 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정례회는 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-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정례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⑥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⑦ 실무협의회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각 도시의 본 협의회 업무담당(6급 상당) 및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되, 상정 안건에 따라 담당 업무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11조(소집)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, 팩스,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- 제12조(의결) ①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  - ②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도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13조(협의·결정 사항의 효력) 위원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O 회의의 구분
- 정례회 : 연2회개최(상하반기), 단체장 참석(부단체장 대리참석가능)
- 임시회 : 회장소집 또는 위원 1/3 이상 요구가 있는겨우
- 실무협의회 : 업무담당 및 담당자로 구성
- O 의결: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, 서면심의 가능
- 제12조에서 과반수 의결은 가부동수 부결과 같은 의미로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회원도시 간 협의를 통해 자구 수정을 검토 하기 바람
- **※예시**) 제12조(의결) ①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#### 6) 재정 (안 제9조~제13조)

- 제14조(경비부담) ①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회장도시의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한다.
  - ②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도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.
- **제15조(회계)** ① 협의회의 예산집행 및 결산 보고는 회장이 정례회에서 보고하며,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협의회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.
- 제16조(사무 인계인수)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  - 정기적인 부담금 납부는 없으나, 협의회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간 동일비율로 부담토록 하였으며, 국민권익위원회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(참고자료)에 따라 회장도시의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・집행토록 하였음
  - 회의개최시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도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토록 하였으며, 부칙에 따라 최초 회장은 양주시장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제30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※ 제4장의 제16조 사무 인계인수 조항은 재정과는 연관이 없어 향후 회원도시간 협의를 통해 보칙(제5장) 또는 조직(제2장)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.

# 7) 보칙 및 부칙

제17조(규약의 개정·폐지)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의결한다.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정·폐지안은 각 위원도시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제18조(기타)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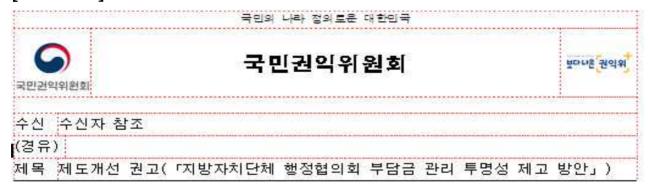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례) 제6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회장은 양주시장으로 한다.

#### 다. 종합의견

- 『624년 양주목 르네상스협의회』는 1395년 태조4년 시작되었던 '양주'의 의의를 되살려 과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 양주시에 편입되어 있었던 도시 간 문화・예술・경제 다방면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각 도시의 부흥을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「지방자치법」상 행정협의회임.
- 양주시의 주도하에 대상도시들과의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작성된 규약안이며,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,
- 향후 대상도시의 확대 및 도시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회 구성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# [참고자료]



- 1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- 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라 "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"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〈붙임1〉과 같이 권고하오니, 〈붙임2〉의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을 참조하시어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아울러,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<u>〈붙임3〉의 '제도개선 추진계획서'를</u> '<u>18. 9. 28.(금)까지</u>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결과 는 〈붙임4〉의 '단위과제별 이행실적'을 작성하여 조치기한('19. 6. 30.)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붙임 1. 제도개선 권고문 1부.

- 2.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1부.
- 3. 제도개선 추진계획서(양식) 1부.
- 4. 단위과제별 이행실적(양식) 1부. 끝.



# 국민권익위원회

# 의 결

의안번호 제2018 - 341호

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

대상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(광역 17, 기초 226)

의 결 일 2018. 8. 20.

#### 주 문

「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」을 별지와 같이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.

#### 이 유

별지와 같다.

#### [별지 일부 발췌]

- □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조치 의무화
  - 사업운영을 위해 징수한 부담금을 **협의회 회장 단체**(부담금 관리 단체)의 예산에 편입
  - 산출 근거 없는 **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지양**하고,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부담금 산정을 통해 **불용·이월 최소화**
- □ 부담금은 「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」에 따라 집행
  - **지방계약법** 적용으로 자의적인 수의계약 제한
  - **업무추진비 집행규칙**을 통한 목적외 사용이나 방만한 운영 차단
  - **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**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사고 위험 방지 등